

IBS 연구단/CI 선정 및 구성 · 운영 FAQ

(IBS 연구평가팀, '21.12.30.)

1. 지정 연구분야

- 1-1. 지정 연구분야 해당 시 신규 연구단장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의 연구단장 지원과 동일합니다. 단, 지원서 양식 작성 시 지정 연구분야 해당 여부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지정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지원서는 선정평가 시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 1-2. 지정 연구분야 연구단은 몇 개나 선정할 예정인가요?
A. 기관 계획과 '22년 연구단 예산을 고려하여 1개~3개 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1-3. 지정 연구분야 연구단장 선정평가절차는 기존 방식과 동일한가요?
A. 네. 연구분야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선정평가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서면검토-심층평가-종합평가-협상 및 임용).
- 1-4. 지정 연구분야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A. 네. 지정 연구분야는 2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 1-5. 지정 연구분야의 세부 연구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세부 연구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연구단] 선정 및 구성 · 운영

2-1. 연구단장 지원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 A. 아닙니다.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구단장은 10년 이상 장기간 왕성한 연구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2-2. 연구단장 지원은 언제나 할 수 있나요?

- A. 보통 매년 초 공개모집을 하며, 2개월 정도 공고기간을 갖습니다. 2022년에는 본원 연구단과 캠퍼스 연구단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12시 (정오) 입니다 (대한민국 표준시).

2-3. 연구단장 지원서 작성 시 ‘Type of Research Center’는 어떻게 정하나요?

- A. 각 항목에 대해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a. Organizing a new Research Center at IBS Headquarters
 - IBS 본원 내에 신규 연구단 지원 시 선택
 - b. Organizing a new Research Center at Campus
 - 캠퍼스 내에 신규 연구단 지원 시 해당 캠퍼스 선택
 - c. Organizing a Research Center in Quantum materials physics
 -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수원, 성균관대) 연구시설 활용 분야로서 해당 분야 지원 시 선택
 - d. Organizing a Research Center in Science of ultra-intense laser
 -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광주, GIST) 연구시설 활용 분야로서 해당 분야 지원 시 선택
 - e. Applying for a Co-director of the 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
 -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수원, 성균관대) 공동연구단장 지원 시 선택

2-4. 캠퍼스 연구단의 연구단장으로는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A. ① 과학기술특화대학(KAIST, DGIST, UNIST, POSTECH, GIST) 소속 교수, 연구원 및 임용예정자

②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및 임용예정자

※ 단, 최종 연구단장 선정 이전에 해당 소속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5. 연구단장 지원서 작성 시 연구단 구성 형태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지원자는 계획하는 연구단의 연구주제 및 연구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연구단장 또는 부연구단장의 수를 고려하여 연구단 구성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6. 연구단장 지원서 작성시 적정 예산 규모(①15억 미만, ②15억 이상~30억 미만, ③30억 이상~50억 미만, ④50억 이상~75억 미만)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연구단의 적정 예산 규모는 연구단의 초기 5년 평균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 장비 시스템 구축비, 장비관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부대경비, 위탁연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평가과정에서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와 과학자문위원회(SAB)에서 예산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연구단 예산 규모는 연구단장 선정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2-7. 연구단 예산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연구단장 선정 후, 지원서에 제시된 연구단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대략적으로 정해지며, 이후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매년 연구단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연구단 예산이 확정됩니다. 또한, 연구단 성과평가 (최초 설립 이후 5년, 그 다음부터는 3년 주기) 결과가 연구단 예산에 반영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2-8. 연구단장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임용되나요?

A. 연구단장의 임용형태는 연구단 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단 종류	연구단장 임용형태
본원 연구단	◦ IBS 수석연구위원(영년직)으로 임용
캠퍼스 연구단	◦ 유치기관 소속을 유지하되 IBS와 별도 고용계약 체결 (겸직)

2-9. 연구단장으로 선정 시, 2022년 12월 말까지 연구 착수를 해야 하나요?

A. 네. 본원 또는 캠퍼스로 이직하여 연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 하에 2023년 12월 말까지 연구 착수 시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소속기관장의 동의 하에 IBS 본원에서의 고용휴직, 파견 또는 겸직이 가능할 경우 원소속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원 연구단장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구단장 임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 연구단 연구단장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년은 65세입니다.

2-11. 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연구단장 선정 후, 현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12. 연구단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단은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 연구원 등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모든 연구인력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연구함이 원칙입니다.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IBS 내부 절차에 따라 임용합니다. 다만, 부연구단장의 경우 별도의 검증을 거쳐 임용합니다.

2-13. 부연구단장의 정의와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A. 부연구단장은 연구잠재력이 큰 중견급 연구자로서, 연구단 내에서 연구단장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연구그룹을 운영하게 됩니다. 부연구단장에게는 연구단장과의 협의 하에 일정규모의 연구비를 배정합니다.

2-14. 부연구단장의 채용시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부연구단장 채용은 연 2회 연구단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학회 및 저널을 통해 별도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연구단장의 선정절차는 연구단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진행되며, 서면평가-심층평가-종합평가의 순으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7개월 소요)

2-15 부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부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선정 절차 완료 후 연구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됩니다.

2-16. 연구단장, 부연구단장 등 연구인력은 전임근무가 원칙인가요?

- A. 네. 전임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연구단장 및 부연구단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휴직, 파견 또는 겸직을 통해 원소속기관의 직을 본원 연구단 연구착수 이후 최대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IBS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부연구단장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7. 연구단에 참여하면서 다른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나요?

- A.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은 IBS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국제공동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선정된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은 기 수행 중인 과제를 원장이 정하는 정리 기간 동안 마무리해야 합니다.

2-18.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부)연구단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부)연구단장으로 선정될 경우, 연구 착수시기는 기 수행 중인 연구사업 (단계) 종료시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19. 연구단의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본원 및 캠퍼스 연구단의 경우 IBS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합니다.

2-20. 연구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요?

A. 연구단 성과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신규 연구단의 경우, 연구단 구성 2년 후에 컨설팅 방식의 중간점검(평가가 아닌 점검 개념)을 실시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즉, 5년차, 8년차, 11년차 등의 주기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8년차 및 그 이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단 폐지 가능)

2-21. 연구단은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연구단은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은 연구그룹 폐지 또는 연구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22. 연구성으로 발생한 논문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A. 연구단의 논문과 지식재산권 등 연구단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로 얻어진 유·무형의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IBS에 있습니다. 다만 논문의 경우 IBS 이외의 기관에 소속을 갖고 있을 경우 병행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2-23. 연구단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CI 연구그룹] 선정 및 구성·운영

3-1. PRC와 기존 연구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PRC는 젊은 연구책임자 육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IBS 본원에 새롭게 도입한 연구단 형태입니다. 기존 연구단과 달리 PRC는 기초과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젊은 연구자들을 선정, CI로 유치하여 도전적인 독립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2. PRC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PRC는 5인 이내의 CI가 이끄는 연구그룹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CI는 본인 연구그룹 내 인력구성, 세부 연구내용, 예산 배분에 대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각 CI의 연구그룹은 연구위원, 연구원, 학생 연구원 및 지원인력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C는 CI간 협의를 바탕으로 PRC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PRC 연구단장(PRC 내 CI간 순환하며 수행)이 PRC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연구단장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3. CI 연구그룹은 어디에 구성되나요?

A. CI 연구그룹은 본원 내에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① 기존 PRC 내 CI 연구그룹: PRC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내 CI 연구그룹 구성

※ PRC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의 CI 연구그룹은 지원 불가

- ② 신규 PRC CI 연구그룹: 선정된 CI는 신규 PRC의 Founding CI로 연구그룹을 구축하며, 신규 PRC는 Founding CI를 포함한 5인 내외의 CI들로 구성
- ③ 연구클러스터 내 CI 연구그룹: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연구클러스터 내 CI 연구그룹 구성

3-4. CI와 연구단장의 선정평가 절차는 동일한가요?

A. 네 동일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은 젊은 연구책임자 육성의 취지를 살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5. CI 지원서 작성시 적정 예산 규모(①10억 미만, ②10억 이상~15억 미만)는 어떻게 정하나요?

A. CI 연구그룹의 적정 예산 규모는 연구그룹 초기 5년 평균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 장비 시스템 구축비, 장비관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부대경비, 위탁연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평가과정에서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와 과학자문위원회(SAB)에서 예산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CI 연구그룹 예산 규모는 CI 선정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개별 그룹에서 구축하기 힘든 고가의 연구장비·시설은 별도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6. CI 연구그룹 예산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CI 선정 후, 지원서에 제시된 연구그룹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대략적으로 정해지며, 이후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매년 연구그룹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연구그룹 예산이 확정됩니다. 또한, 연구그룹 성과평가 결과가 연구그룹 예산에 반영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3-7. C로 선정되면 본원에 어떤 형태로 임용되나요?

A. C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초빙)연구위원, 연구위원, 또는 수석연구위원(영년직)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될 경우, C는 원소속기관의 고용 휴직 등을 통해 기존 신분을 5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년차 성과평가 시 영년직으로 임용되기 위한 영년직 심사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영년직을 부여 받는 경우 IBS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② 연구위원으로 임용될 경우, IBS로의 이직이 원칙입니다. 단, 원소속기관장의 동의하에 겸직 등을 통해 기존 신분을 2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년차 성과평가 시 영년직으로 임용되기 위한 영년직 심사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수석연구위원(영년직)으로 임용될 경우, IBS로의 이직이 원칙입니다. 단, 원소속기관장의 동의하에 겸직 등을 통해 기존 신분을 2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8. C로 선정 시, 2022년 12월 말까지 연구 착수를 해야 하나요?

A. 네. 2022년 12월 말까지 IBS에서 연구 착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 하에 2023년 12월 말까지 연구 착수 시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9. C 선정 후 영년직을 부여받을 경우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원 연구단장과 동일하게 정년은 65세입니다.

3-10. C의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C의 인건비는 선정절차가 완료된 후, 현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11. CI 연구그룹 내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CI가 이끄는 연구그룹은 CI와 연구원 등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모든 연구인력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연구함이 원칙입니다.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IBS 내부 절차에 따라 임용합니다.

3-12. CI는 다른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나요?

A. CI는 IBS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국제공동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선정된 CI는 기 수행중인 과제를 원장이 정하는 정리기간 동안 마무리해야 합니다.

3-13.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CI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CI로 선정될 경우, 연구 착수 시기는 기 수행 중인 연구사업 (단계) 종료시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14. CI 연구그룹의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IBS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합니다.

3-15. CI 연구그룹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요?

A. PRC의 성과평가는 CI 연구그룹별로 이루어지며, CI 연구그룹에 대한 성과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연구착수 2년 후에 컨설팅 방식의 중간점검(평가가 아닌 점검 개념)을 시행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3-16. PRC는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A. PRC 역시 다른 연구단과 마찬가지로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PRC의 성과평가는 CI 연구그룹별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은 해당 CI 연구그룹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17. CI 연구그룹의 연구성과로 발생한 논문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 A. 다른 본원 연구단과 동일하게 CI 연구그룹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로 얻어진 유·무형의 연구성과물(논문,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IBS에 있습니다. 다만 논문의 경우 IBS 이외의 기관에 소속을 갖고 있을 경우 병행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3-18. CI가 궤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구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 A. 다른 본원 연구단의 연구단장이 궤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CI의 궤위 또는 사고 발생시 해당 CI 연구그룹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